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4월 13일

효문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송 *	송 * 1968-04-12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(진장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4-13
서 *선	서 *선 1978-10-20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(진장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4-13